

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안내 말씀

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.

출장음식서비스업, 스포츠교육기관,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,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, 중고 자동차 판매업이 2017.2.3.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.

위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7.7.1.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액을 포함)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**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**하여야 합니다.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**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%가 과태료로 부과**되오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업 종	국세청 업종코드
출장음식서비스업	출장음식서비스업(552105)
스포츠교육기관	스포츠교육기관(809003, 809004)
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	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(930915)
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	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(523931, 523932)
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	중고자동차 판매업(501202, 501303)
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상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상 업종 추가 필요) * 도매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급

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며, 귀하(사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
2017년 5월 일

세무서장 (관인생략)

안내 :

조사관,

Tel

▣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▣

- **(가입방법)** ① ~ ③ 중 선택

- ①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②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

상 호	홈페이지	연락처
(주)케이티	www.hellocash.co.kr	02)2074 – 0340
(주)엘지유플러스	taxadmin.uplus.co.kr	1544 – 7772
한국정보통신(주)	www.kicc.co.kr	1600 – 1234
퍼스트데이터코리아(유)	www.moneyon.com	1544 – 7300
(사)금융결제원	www.kftcvan.or.kr	1577 – 5500
나이스정보통신(주)	taxsave.nicevan.co.kr	02)2187 – 2700

- ③ 국세상담센터 ☎ 126 (현금영수증) ARS를 이용하여 가입

☎ 126 → ①(홈택스상담) → ①번(현금영수증) → ②번(상담센터 연결) → ①번(한국어) → ④번(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) → 사업자번호(10자리) → 비밀번호 설정 → 대표자 주민번호(13자리) → 비밀번호(4자리) → ①번(가맹점 가입)

- **(미가입시 불이익)**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× 1% 가산세 부과

▣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 의무 ▣

- **(발급방법)** 신용카드단말기, 인터넷, ARS 전화 중 선택
- **(발급의무 기준금액)** 거래 상대방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함
*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(010-000-1234)로 발급
- **(미발급시 불이익)** 미발급금액 × 50% 과태료 부과(조세범처벌법 제15조)

▣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 부착 ▣

- **(부착의무)**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점 스티커를 ‘계산대나 계산대 근처, 사업장 출입문 입구’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함
- **(미부착시 불이익)** 50만원의 과태료 부과
*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